

<요약설명서>

외화RP 설명서

투자위험등급: 5등급						신한투자증권은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6단계 투자위험등급 중 본 상품의 <b>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5등급(낮은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b>
1	2	3	4	5	6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녹취	숙려		고령투자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제한		
	일반투자자	고령투자자 부적합투자자		고령투자자	부적합투자자	일반투자자
N	N	N	N	N	N	N

\* 고령투자자: 65세 이상 / 부적합투자자: 고객투자성향등급보다 높은 위험등급의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

※[주의] 고객님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구분	주요 내용
외화 예금	외화예금이란, 고객이 외화 자금을 은행에 일정 기간 보관하고 만기에 이자와 함께 받는 상품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외화RP	외화RP란, 일정 기간 후에 회사가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담보채권을 매도 및 외화 자금을 수신하고, 만기시 고객에게 외화 원금과 약정수익률을 지급하는 외화표시 단기금융상품입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 발생가능한 불이익 등

발생가능한 불이익	- 원금손실 위험: 외화RP는 약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매도 후 원화 등 타 통화로의 환전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의한 환차손 및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의 지급불능 사유 발생시 회사는 고객에게 원리금 대신 조건부 매도한 채권을 인도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채권의 신용등급, 시장상황 등에 따라 원금손실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중도해지 불가	중도해지시 비용발생	중도해지 허용
	-	○	-
	- 투자자에 의한 중도상환 신청이 가능한 상품으로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약정형 상품의 경우 중도 환매 시 추가 비용(중도환매 수익률 적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해당 채권의 신용등급, 시장상황 등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약정형 상품의 경우, 만기 전 매도시 적용되는 중도환매 수익률, 또는 만기 후 수시형 상품으로 자동재투자시 적용되는 약정수익률은 최초 약정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으며, 이후 6개월 이상 매매 및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 휴면/장기미거래 금융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 발생가능한 불이익 등 (계속)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러(USD)RP: 100만달러 이상 매매 시 1영업일 전 15:00까지 영업점 등을 통해 사전에 요청하셔야 합니다.</li> <li>- 엔화(JPY)RP: 100만엔 이상 매매 시 1영업일 전 15:00까지 영업점 등을 통해 사전에 요청하셔야 합니다.(사전 요청된 금액 이외 당일 거래 불가)</li> <li>- 향후 시장상황 및 금리변동 등에 의해 외화RP 약정 수익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상품의 주요 위험으로는 금리 변동 위험, 환율 변동 위험, 유동성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ul>
------	--

예금자보호  
여부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원금비보장상품**입니다.

## □ 당사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구분	고객 투자성향	유의사항
1등급 (매우높은위험)	공격 투자형	- 시장 평균수익률을 훨씬 넘어선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추구,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함.
2등급 (높은위험)	적극 투자형	- 시장 평균수익률을 넘어선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추구,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충분히 수용
3등급 (다소높은위험)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4등급 (보통위험)	위험 중립형	- 투자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함. -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일정수준 손실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5등급 (낮은위험)	안정 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6등급 (매우낮은위험)	안정형	-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일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 □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사항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 상담센터 (1588-0365) 및 당사 홈페이지([www.shinhansec.com](http://www.shinhansec.com))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개발부서: 글로벌채권구조화운용부 (대표번호:1588-0365)

## 외화RP 개요

### ● 외화RP 상품 정보

- 외화RP 상품 약정수익률 및 기간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당사 홈페이지 [www.shinhansec.com](http://www.shinhansec.com) > 자산관리몰 > 채권/RP > RP/외화RP안내에서 조회

### ● 외화RP 매수 프로세스 (매매당일: T)

#### 1. 달러(USD)RP

##### 1) 고객 신청 (T-1~T): 매수 금액 및 만기 확정

- 매매시간: 영업일 9:00 ~ 15:00,  
100만달러 이상 매수시 1영업일 전 15시까지 사전 요청
- 신규 고객의 경우, 외화RP 등록시 외화가상계좌 자동생성
- 온라인 상품의 경우, 영업점에서 매수 불가

##### 2) 달러(USD)RP 매수(T)

- 금액 및 만기 최종 확인 후 만기일 선택 및 매수고객의 은행계좌에서 외화가상계좌로 원금 이체(외화가상계좌로의 외화현찰 입금은 상품매수 불가로 금지)
- 환매수가액의 105%이상(원화채권 등 타 통화채권으로 조건부매도를 할 경우 외국환매매기준을 평가)에 해당하는 시장가액의 채권을 고객 계좌로 조건부매도  
▶ 환매수 가격 = 조건부매도가격 x (1 + 약정일수/365 x 조건부매도이율)

#### 2. 엔화(JPY)RP

##### 1) 고객 신청 (T-1~T): 매수 금액 및 만기 확정

- 매매시간: 영업일 9:00 ~ 9:30,  
**100만엔 이상 매수시 1영업일 전 15시까지 사전 요청 필수**  
**(사전 요청된 금액 이외 당일거래 불가)**
- 신규 고객의 경우, 외화RP 등록시 외화가상계좌 자동생성
- 엔화(JPY)RP의 경우 온라인 거래는 불가하며 영업점에서 매수 가능

##### 2) 엔화(JPY)RP 매수(T)

- 금액 및 만기 최종 확인 후 만기일 선택 및 매수고객의 은행계좌에서 외화가상계좌로 원금 이체(외화가상계좌로의 외화현찰 입금은 상품매수 불가로 금지)
- 환매수가액의 105%이상(원화채권 등 타 통화채권으로 조건부매도를 할 경우 외국환매매기준을 평가)에 해당하는 시장가액의 채권을 고객 계좌로 조건부매도  
▶ 환매수 가격 = 조건부매도가격 x (1 + 약정일수/365 x 조건부매도이율)

### ● 외화RP 매도 프로세스

#### 1. 달러(USD)RP

##### 1) 고객 신청 (T-1~T): 매도 금액 확정

- 매매시간: 영업일 9:00 ~ 15:00, 100만달러 이상 매도시 1영업일 전 15시까지 사전 요청
- 온라인 상품의 경우, 영업점에서 매도 불가

##### 2) 달러(USD)RP 매도(T)

- 사전에 은행 외화지정계좌 등록 필수
- 외화가상계좌에서 등록된 고객의 외화지정계좌로 원리금 이체
- 조건부매도채권을 고객으로부터 회수

## ● 외화RP 매도 프로세스

### 2. 엔화(JPY)RP

#### 1) 고객 신청 (T-1~T): 매도 금액 확정

- 매매시간: 영업일 9:00 ~ 9:30,

**100만엔 이상 매도시 1영업일 전 15시까지 사전 요청 필수  
(사전 요청된 금액 이외 당일거래 불가)**

- 엔화(JPY)RP의 경우 온라인 거래는 불가하며 영업점에서 매도 가능

#### 2) 엔화(JPY)RP 매도(T)

- 사전에 은행 외화지정계좌 등록 필수

- 외화가상계좌에서 등록된 고객의 외화지정계좌로 원리금 이체

- 조건부매도채권을 고객으로부터 회수

## ● 주요 투자 위험요인

### 1. 채무 불이행 위험

- 외화RP는 회사의 지급불능사유와 동시에 조건부매도채권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금리변동 위험

-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약정수익률이 변경될 수 있으며, 만기 후 재투자시 변경된 약정수익률이 적용됩니다.

예시) 9/1일에 9/30일 만기로 매수(약정수익률 4.9%) 후 9/15일에 당사에서 7~30일 만기 약정수익률을 4.7%로 변경할 경우, 9/30일 만기까지는 기존 약정수익률 4.9% 적용. 이후 9/30일에 10/29일 만기로 재투자시 약정수익률 4.7%로 적용

### 3. 환율변동 위험

- 외화RP 매매 전후 가입통화 이외에 타 통화로 환전시 환율 변동에 의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 1. 달러(USD)RP

원/달러 환율 1,000원에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USD)RP를 매수하고, 매도 시점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이하인데 다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경우, 환차손으로 인한 원금손실 발생 가능

#### 2. 엔화(JPY)RP

원/엔(100엔당) 환율 1,000원에 원화를 엔화로 환전해서 엔화(JPY)RP를 매수하고, 매도 시점에 원/엔(100엔당) 환율이 1,000원 이하인데 다시 엔화를 원화로 환전할 경우, 환차손으로 인한 원금손실 발생 가능

- 회사의 지급불능사유로 조건부매도채권 인도시 환율 변동에 의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유동성 위험

- 거액 자금의 경우 시장상황, 한도 등의 사유로 외화RP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매수/매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세 관련 사항**

- 외화RP 약정수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이자소득이며, 매도시점에 분리과세로 15.4%(소득세 14% + 주민세 1.4%)가 원천징수 됩니다.

● **제도 관련 사항**

- 국내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관련 사항**

- 외화RP 매매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환전시 수수료는 환전대행 기관에 따라 다르며, 외화RP는 환전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 **재투자 관련 사항**

- 외화RP의 원리금은 원화 등 타 통화로 환전하지 않고 동일 종목으로 바로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 약정형 상품의 경우, 만기 후 별도로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수시형 상품으로 자동재투자가 진행됩니다.

● **RP매매 대상증권 관련 사항**

- 매도증권은 국내 투자적격등급(국내신용등급 BBB등급)이상의 채권으로 운용되며,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국제신용등급 A등급이상, 증권신고서 면제대상)도 포함됩니다.
- 매도증권은 고객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고객은 증권 대신 통장 또는 증권 카드를 교부 받음으로써 회사에게 매도증권의 보관을 위탁한 것으로 하고, 회사는 매도 증권을 회사 이름의 고객 분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합니다.
- 회사는 환매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관 중인 매도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 사항**

- 본 외화 RP의 투자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고객의 판단과 책임에 의하며 투자손익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상품개발부서: 글로벌채권구조화운용부 (대표번호:1588-0365)**

"설명서 상에 사용된 금융용어 중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시면 하단 QR코드를 찍으세요. 금융감독원 FINE에서 제공하는 금융용어사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용어사전」**

금융감독원 FINE web page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자의 권리 ]

### 1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상품 :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 진행절차 :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을 기재한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
- ② 회사는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통지하고(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4항에 따른 예외 가능) 거절 시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

- 주의사항 :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2

#### 자료의 열람 요구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행절차 :

- ① 열람의 목적, 범위, 방법등을 기재한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제출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함
- ③ 회사는 '6영업일' 이내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함

- 유의사항:

단,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

### 3

#### 청약의 철회

- **본 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